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307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나22678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30735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

담당변호사 김철웅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720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액은 2019. 9. 17.을 기준으로 174,471,706원이다.

나. B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인 'C'는 2018. 9. 7. 부실 처리되었고, B은 2018. 11. 22. 자신의 채무자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D와 합의하여 합의금

5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합의금을 자신의 아들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9. 1. 12. 10,000,000원, 2019. 1. 24. 20,000,000원, 2019. 1. 28.

26,000,000원(합계 56,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2019. 2. 12.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E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00원이 B의 장인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D로부터 받은 합의금 56,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E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위 돈을 E에게 증여할 당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E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B으로부터 위 합의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은 피고는 전득자로서 악의가 추정되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E의 계좌를 B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B이 E의 계좌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B과 피고 사이의 금원지급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B이 E의 계좌로 합의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이 E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E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09)를 별도로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E은 B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대여한 것이지 위 합의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위 법원은 E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이 위 돈을 E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E의 계좌로 합의금을 입금한 것이 그 돈을 E에게 증여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B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5,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돈을 이체한 피고의 위 계좌에는 F(B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딸), E 외에는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ATM기로 현금 출금되었으며, 특히 E의 계좌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입금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단기간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어 남은 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그 돈을 무상 귀속할 의사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등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송현

별지

금원지급행위 목록

날짜	금액
2019-01-24	5,000,000
2019-01-25	5,000,000
2019-01-26	5,000,000
2019-01-27	5,000,000
2019-01-28	5,000,000
2019-01-29	5,000,000
2019-01-30	5,000,000
2019-02-01	5,000,000
2019-02-02	5,000,000
2019-02-03	5,000,000
2013-03-15	5,000,000
합 계	55,000,000

